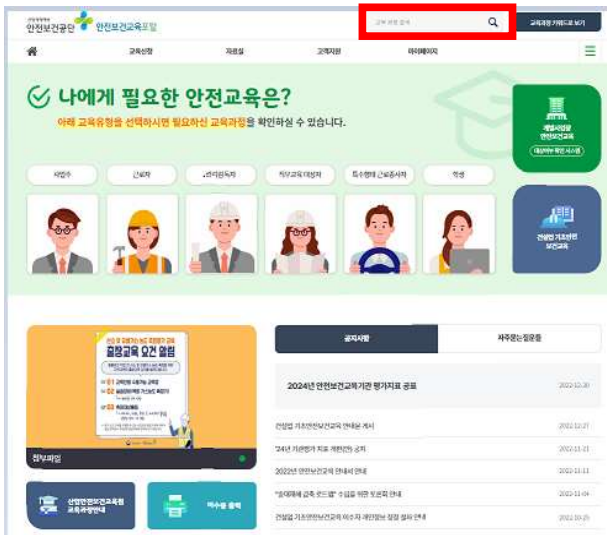
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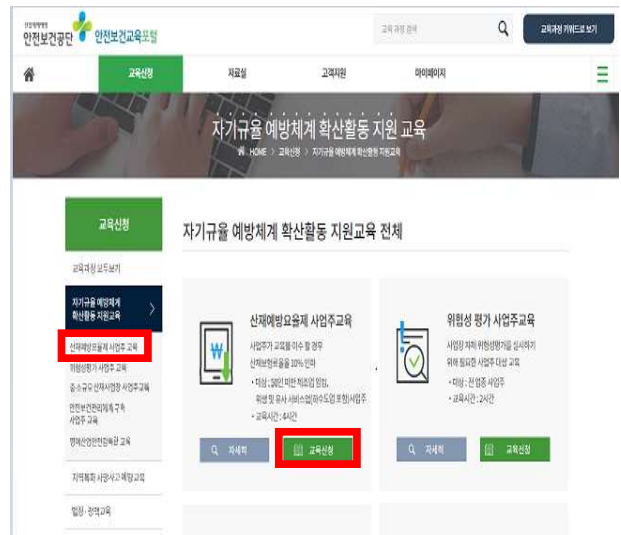
- 1. 교육대상:*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종(산재보험가입기준) **사업주**
- 2. 교육문의:**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영교육센터 조재영 과장 (tel. 031)259-7264)
- 3. 교육혜택:** 교육 시 산재예방계획서 작성·제출 후 공단 인정 시 다음연도(1년) 산재보험료율 10%감면
※ 연말 근로복지공단 최종확인결과, 인정대상여부(업종, 근로자 수 등)가 변경될 수 있음.
- 4. 제출서류:**

제출대상	증명서류
2024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(※ 올해 개시한 사업장만 해당됨)	① 고용·산재보험 성립신고(가입신청서)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와 가입자 명부 ⇒ 상기 증명서류 중 택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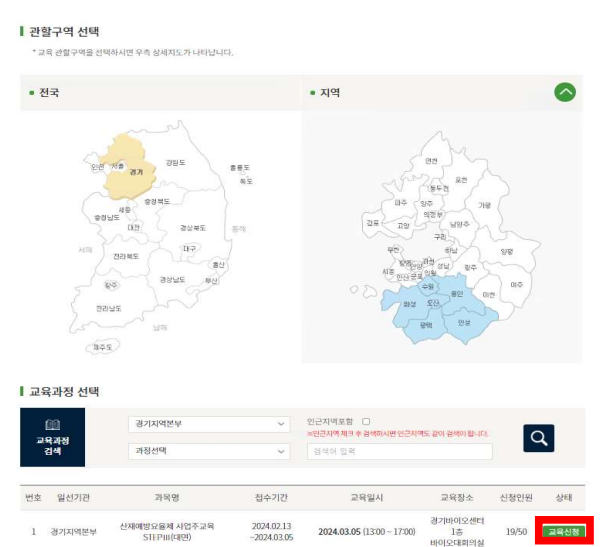
- 1) 안전보건교육포털(educosha.or.kr/headquarter) 접속 및 우측상단 [교육과정 검색창에 "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" 검색



- 또는 [교육신청] - [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] - [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] 클릭



- 2) 지도에서 수강희망지역 설정 후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확인하여 [교육신청] 버튼 클릭



- 3) 사업장정보 및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하여 [신청 완료] 클릭

